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토지관리과-21275 |
| 등록일자 | 2015.12.9. |
| 결재일자 | 2015.12.9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지적관리팀장 | 토지관리과장 | 도시관리국장 |
| 명진만 | 김영균 | 노영빈 | 12/09 이진형 |
| 협 조 | | | |

2015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보고



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

2015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보고

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측량 기준점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

I 추진개요

■ 법적근거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규칙 제5조
-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
-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지침[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-956호, 2009.12.14]

■ 조사기간 : 2015. 04. 01. ~ 2015. 11. 15.

■ 조 사 량 : 총 977점

■ 조사결과

(2015.01.01. 기준)

| 구 | 분 | 기준점수 | 조 사 결 과 | |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| 완전 | 망실 | 복구 | |
| 지적기준점 | 지적삼각점 | 7 | 7 | - | - | |
| | 지적삼각보조점 | 23 | 23 | - | - | |
| | 지적 도근점 | 937 | 862 | 75 | | 구설치 11 공사설치 64 |
| 기타기준점 | 국가기준점 | 3 | 3 | - | - | |
| | 도시기준점 | 7 | 7 | - | - | |
| 총 계 | | 977 | 882 | 75 | - | |

II

추진내용

■ 측량기준점표지 이상 유·무 일제조사(현지조사)

「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지침」에 의거 측량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 조사

■ 측량기준점표지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 징수 검토

굴착승인 자료, 기존 현장사진 등 활용

III

조치사항

- 망실(훼손)된 지적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폐기하여 구보에 고시
- 지적측량기준점 관련대장(총괄대장, 성과표, 지적측량기준점망도) 및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정리
 - 국가기준점 :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시스템에 입력
 - 지적기준점 :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정리
 -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멸실유무, 사고원인 등 기재
- 망실 원인행위자가 확인된 기준점에 대하여 기준점 재설치비 부과 통지
- 우리구에서 시행한 공사에 의해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 13500-1349(1996.06.12)호에 의거 재설치비 부과 제외

IV

행정사항

■ 측량기준점 조사결과 제출

- 측량표지 조사보고시스템 입력
-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 현황조사 보고
-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보고 :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서울시에 보고

따로붙임 : 1. 측량기준점 현황(망실포함).
2. 측량기준점 망실 위치도. 끝.